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2023. 8. 23.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AIRPORT

공동주최



배준영, 김도읍, 맹성규, 이양수, 허종식

후원

인천·공항 상생 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목 차

축 사

1. 국회의원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4
2. 국회의원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북구·강서구(을))..... 6
3. 국회의원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남동갑) 8
4. 국회의원 이양수(국민의힘 / 속초·인제·고성·양양) 10
5. 국회의원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12

주제발표

공항경제권 구축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 김웅이 교수(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15

지방자치단체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 김지수 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 33

- 패널토론 45

- 제 정 법 53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 중구 · 강화군 · 옹진군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 · 강화군 · 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바쁜 와중에도 기꺼이 좌장을 맡아 주신 유창경 항공우주산합융합원장님과 발제자 ·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행사를 주최해 주신 국민의힘 김도읍, 이양수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허종식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차대전 직후 태평양 섬의 원주민들 사이에는 '화물신앙(Cargo Kult)'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는 전쟁을 위해 서양인들이 몰고 온 진귀한 물건으로 가득 찬 강철 새(비행기)를 숭배하는 것으로, 비행기가 등장한 국제정치적, 과학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행기 자체에만 천착했기 때문에 생긴 미신이었습니다.

지역 공항을 바라보는 그동안의 시선 역시 이 화물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공항의 수로 볼 때 '항공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일부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은 만년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이는 제도권이 공항을 단순한 운송 거점으로만 보고, 공항만 지으면 자연스럽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1대의 부품 수는 2만여 개에 불과하지만, 대형 비행기 1대의 부품은 200만 개에 달합니다. 관제탑, 활주·유도로, 격납고 등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도 많고,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에도 아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즉, 공항은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 '규모의 경제'를 필요로 하기에 공항의 건설에만 천착한다면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대규모 투입·산출을 통해 공항의 잠재력을 온전히 끌어내기 위해서는 공항과 배후 지역의 인적·사회적·문화적 자원을 융합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공항경제권'의 개념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공항 운영자의 역할과 책무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도출되길 소망합니다. 저 역시 오늘 논의된 정책 제안을 귀담아듣고, 지난 5월 10일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토론자와 참석자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정과 직장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부산 북구 · 강서구(을)

안녕하십니까? 부산 북구 · 강서구(을) 국회의원 김도읍입니다.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 개최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님, 허종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발제를 맡아주신 김웅이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님,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님, 그리고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님을 비롯하여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공항의 기능은 항공운송 및 항공교통수단 역할에서 나아가 주변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산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거점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가들은 공항을 중심으로 첨단 · 항공산업, 비즈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니스, 물류, 관광, 문화 등을 융합한 '공항경제권'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항은 여전히 교통 및 운송 역할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항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공항과 지역 산업, 사회 등을 연계하는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합니다.

이에 오늘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항과 지역이 서로 상생·발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국회의원 김도읍



국회의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맹성규입니다.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토론회를 준비하시는 데 애써주신 배준영 의원님을 비롯한 공동 주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좌장을 맡아주신 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지수 센터장님, 김웅이 한서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공산업은 인적·물적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이자 관광수요 등 연계산업과 함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2001년 당시 세계 최고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을 개항하며 항공산업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공항 중 연간 여객이 1천 명 이상인 곳은 인천·김포·김해·제주국제공항 4곳에 불과하고, 이 외 공항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후에는 인천·제주국제공항을 제외한 공항들 모두 적자를 기록 중인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내 공항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 운영 방식 개선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항경제권 조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항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산업·경제·관광 기반 등 배후지 인프라에 맞춰 개발을 지원한다면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자인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 역시 지자체와 공항이 함께 하는 경제권을 형성한다면 더욱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MRO 산업을 육성하고, 복합산업단지 개발 등 공항경제권 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 인천이 세계적인 공항 배후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시금석이 되기를 바라며, 저 역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국내 공항과 공항 주변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국회의원 **맹성규**



국회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속초 · 인제 · 고성 · 양양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 인제 · 고성 · 양양 국회의원 이양수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멈췄던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에 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권'이 새로운 산업의 한 축으로 떠오르는 이 때,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시의적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뜻 깊은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아주신 배준영 의원님, 김도읍 의원님, 맹성규 의원님, 허종식 의원님, 그리고 준비에 함께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아주신 한서대학교 김웅이 교수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지수 센터장님과 이어질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유창경 원장님을 비롯한 지정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이제 공항은 단순한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교통 시설만이 아닌, 비즈니스·쇼핑·관광의 기능을 갖춘 복합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항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을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공항과 관련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공항경제권'의 조성입니다.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공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 형성에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트레담 스키폴 공항도시, 미국 멤피스 에어로폴리스,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도시 등의 사례는 우리가 공항경제권을 형성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항경제권의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제시된 고견을 바탕으로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국회의원 **이양수**



국회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허종식입니다.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위해 함께 힘써주신 배준영 의원님, 김도읍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맹성규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경제권 구축은 공항과 주변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핵심사업입니다.

산업의 발전으로 단순히 ‘운송을 위한 공간’으로 여겨졌던 공항이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창출을 위한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항 주변 지역을 연계해 글로벌한 하나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홍콩 책랍콕 공항, 핀란드 헬싱키 공항 등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주변 지역간의 연계를 통해 광범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천국제공항도 물류·관광·MRO 등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고 경제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항경제권 구축이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대부분 중앙정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항이 위치한 지역의 문화적·산업적 특색을 반영해야만 공항경제권도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 방안과 공항경제권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는 폭넓은 지혜의 교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다양한 고견이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유창경 원장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한서대학교 김웅이 교수님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지수 센터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국회의원 **허종식**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발제 1

**공항경제권 구축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김웅이 교수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공항개발과 공항경제권 구축

2023. 8. 23

공항도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 상생발전협의회

CONTENTS

- 1 공항경제권 개요와 필요성
- 2 국내 공항경제권 사례
- 3 해외 공항경제권 사례
- 4 공항경제권 관련 제도 검토
- 5 공항경제권 추진 정책
- 6 결어

공항경제권 필요성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 공항은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지역 산업·경제·사회·문화 플랫폼**으로 육성 발전을 제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2020~2024)

- ❖ 공항을 단순 교통망(Infra)에서 **지역 신 산업 육성(Industry) 기지**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와 공항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공항중심의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과 공항운영자(공항공사) 중심의 **공항개발 권역과 배후지역의 Biz 포트 개발**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경제권 개발** 시 공항이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강화**

국내 공항 현황 및 추가건설 계획



공항경제권 필요성

공항은 주변 지역 낙후



항공운송과 교통수단 활용의 기능 수행



공항은 지역경제 친화적인 인프라



복합 다변화된 기능 수행하는 Aerotropolis



공항경제권 개념

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은 경제생활공간을 의미

- 권역 : 어떤 특정한 범위 안의 지역
- 생활권역 : 사람이 활동하며 살아가는 특정한 범위 안의 지역
- 기초생활권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시, 군, 구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 기초생활권 VS 광역경제권



공항경제권 개념

공항지역이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주요한 거점으로 인식

1 공항(Airport)

- ▶ 항공기 이착륙과 국내, 국제를 항공교통망으로 연결, 터미널 내에서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

2 공항도시(Airport City)

- ▶ 공항터미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여객관련 수요와 물류를 처리하기 위해 대도시 중심상업지구의 역할

3 공항기반도시(Aerotropolis)

- ▶ 반경 km 이내 항공 및 첨단 고부가가치산업 클러스터와 주거 배후단지를 개발

4 공항경제권(Cf. 공항회랑, airport corridor)

- ▶ 공항인프라를 활용 다양한 경제활동의 집적을 유도하여 공항과 지역경제 간의 성장 시너지효과 확보가능 공간

[공항복합도시의 개념]



Source : Framing the Airport City and Aerotropolis Phenomena, John D. Kasarda, 2007

2. 국내공항 경제권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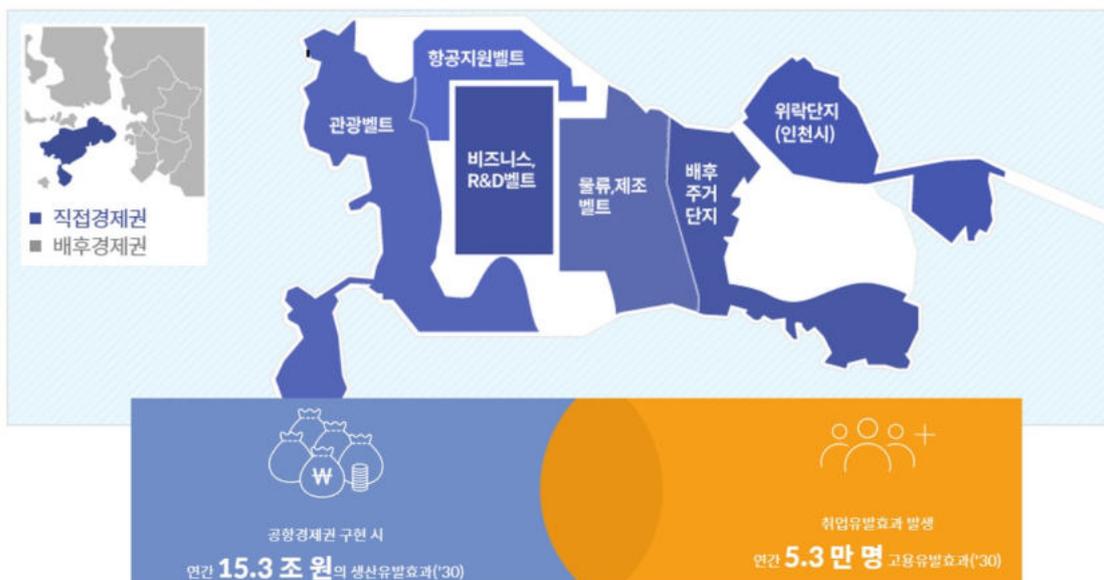
- ❖ 인천 공항경제권
- ❖ 기타 지방공항 사례

인천 공항경제권

2. 국내 공항경제권 사례

우리나라 관문공항인 인천공항경제권 설정한 사례

- 인천공항과 주변지역의 개발
- 인천공항과 4단계 개발과 공항경제권



자료원 :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해외 공항경제권 사례

- ❖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 ❖ 핀란드 헬싱키 공항
- ❖ 홍콩 책랍콕 공항
- ❖ 일본, 중국 등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공항 인근지역 5개 비즈니스 파크로 구성된 스키폴 공항

[스키폴공항 주변지역 개발 현황]



개발 위치

- 암스테르담시 서남측 17km지점 스키폴 국제 공항터미널 전면에 위치

개발규모

- 약 151만 ㎡규모
- Business City Schipol 10만㎡
- Schipol 국제공항지역: 141만㎡

기능

- Business City Schipol 국제회의장, 호텔, 상가 통신센터
- Schipol 국제공항지역: 공항 관련 산업 및 다국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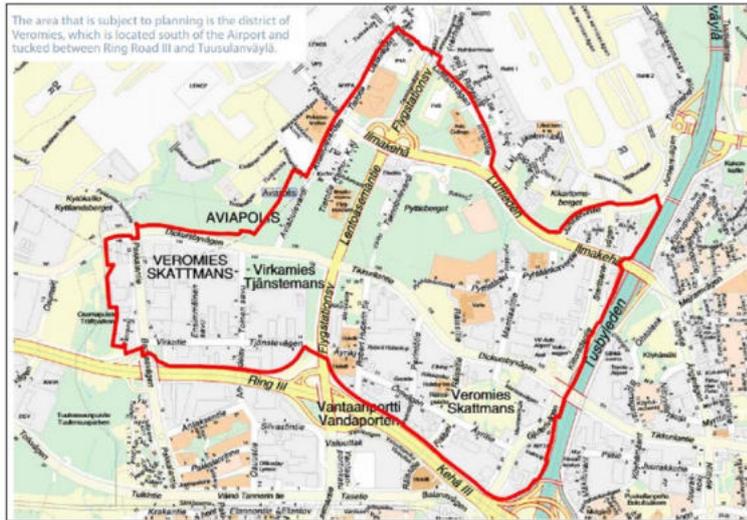
개발주체

- SADC(Schipol Airport Development Company)
- 암스테르담시, 할레머메어 지방정부

핀란드 헬싱키 공항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공항 기능을 기반으로 공항주변 14개 지구로 구분하여 복합단지 개발

[핀란드 헬싱키 공항 Aviapolis]



개발 위치

- 헬싱키 도심에서 10km 떨어진 반타시에 위치

개발규모

- 4,200만 m² 규모

기능

- 대규모 비즈니스 센터, 전자, 환경, 물류 첨단통신, 복지 서비스 분야를 특화하여 관련 분야 연구개발 시설 도입

개발주체

- 반타시 및 공항공사(Finavia), 항공사, 금융기관 등의 20여개 회사가 모여 Aviapolis 개발팀을 구성

15

홍콩 책랍콕 공항

공항과 인접한 신도시에 업무지원단지를 조성하여 주거시설, 호텔, 업무용사무실 등 개발

[책랍콕공항 주변지역 개발]



개발 위치

- 홍콩 도심에서 남서쪽 20km 지점에 위치

개발규모

- 57만 m² 규모

기능

- 공항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경제, 무역, 관광 등의 산업 진흥을 유도하고 항공수요 증대를 통해 중국 관문으로서의 입지와 지역 허브로서의 입지를 구축함으로써 홍콩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역할

개발주체

- 홍콩공항공단(Airport Authority Hong Kong)

16

일본, 중국 등

아시아 대표 공항들은 국제항공도시로 공항복합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지역을 개발 중에

일본 나리타 공항

: 나리타국제공항도시 조성 9개 시정 프랜 수립

정부 및 공항이 속한 치바현에 요청해 진행하는 사업, 나리타 국제공항회사에 요청해 진행하는 사업, 시·정이 협력하거나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구분



중국 시안 셴양공항

: 시안 공항도시 시범지구 발전계획 수립

시안 셴양공항과 산시성 유일의 대외 개방 항구를 활용하여 서북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 일류 항공물류 허브 구축, 실크로드 하늘길 건설 등을 개발 목표



4. 공항경제권 관련 제도 검토

- ❖ 경제권 지정 제도 검토
- ❖ 인천공항의 예

경제권 지정 제도 검토

국내 관련 지구 지정의 비교로 공항경제권 수립 기초 법안 검토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법적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정 목적	• 외자유치, 무역진흥, 국제물류원활화, 지역개발	• 외자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 외자유치
지정 권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시도지사·중앙행정기관 장지정요청	• 시도지사 - 시도지사 지정요청	• 시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관리 권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산단형) • 국토교통부 장관(물류형)	• 시도지사	• 시도지사
지정 위치	• 산업단지·항만·공항·유통단지 화물터미널	• 국제공항만 주변지역 내륙지역 확대(2007)	• 산업단지 내
입지 형태	• 비관세지역, 집적지역	• 특별행정구역(2,000만~6,000만평)	• 임대단지 운영원칙
지정 지역	• 마산 익산(이리), 군산, 대불, 동해 울촌(산단형) • 부산, 광양, 인천, 인천공항(항만 공항형)	•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3개 지역 (2003년) • 황해(평택 당진), 대구경북(대구, 경산, 영천, 구미), 새만금 군산 (2008년)	• 10개 지역 - 천안, 오창, 전주, 구미, 평동, 대불, 진사, 금의, 당동, 지사

19

경제권 지정 제도 검토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입주 자격	• 외투기업 내국기업 • 제조업(수출주목적) 물류업 무역업 지원 서비스업 등	• 외투기업 • 조사업 물류업 주거 의료 교육 외국방송 금융 등	• 외투기업 • 제조업 물류업 등 • 외투지분 30% 이상(평동, 대불 10% 이상)
외투 기업 조세 감면	• 법인세(소득세) 3년 100%, 2년 50% • 지방세 8~15년 • 감면 조건 - 제조업 1,000만달러 이상 - 물류업 500만 달러 이상	• 법인세(소득세) 3년 100%, 2년 50% • 지방세 8~15년 • 감면조건 - 첨단제조 관광 1,000만달러 - 물류 500만달러	• 법인세(소득세) 3년 100%, 2년 50% • 지방세 8년~15년 • 감면조건 - 제조업 1,000만달러 - 물류업 500만달러
관세 부과	• 관세유보(수입물품 자본재)	• 자본재 3년 관세면제	• 자본재 3년 관세 면제
임대료	• 부지가액 1%	• 부지가액 1%	• 부지가액 1%
임대료 감면	• 외투기업 100% 감면	• 관리청 결정	• 고도기술 100% • 일반제조 75%
자금 지원	• 지정단계에서 부지매입분담 비율 결정 • 국비 최대 75%	• 분담 비율 미결정	• 수도권: 국비 40% • 비수도권: 국비 75%
행정 지원 업무	• 출장소 - 관세 조세, 출입국 관리 - 우편 통신, 검역 노무사무	• 시도지사직속 전담행정기구 - 경제자유구역청 - 국가 위임 및 시도 사무	• 산단공(7) 관리 • 지자체(3) 관리

20

인천공항의 예

● 공항자유무역지역(물류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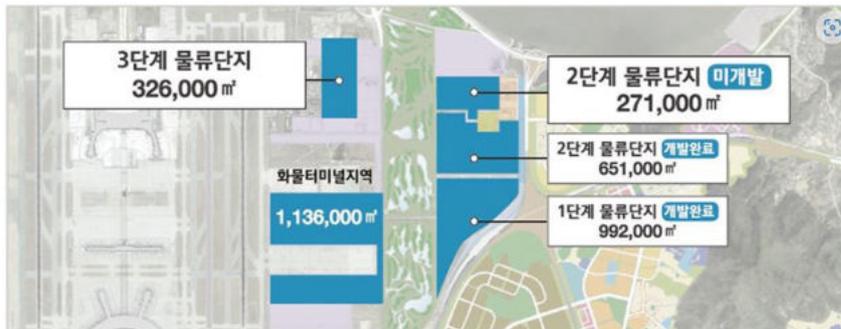
글로벌 사업 확장의 활로를 열어줄 날개가 펼쳐집니다.



- **입주자격**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외국인 투자기업
 - 지식서비스 산업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 **건축조건**
 - 물류·제조기업 건폐율 70%, 용적율 350%
 -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준 기준 준수
- **인천국제공항공사 토지 임대료 감면 혜택**
 - 수출입 통관 절차 없이 반입/반출에 의한 신속한 수출입 가능(Paperless)
 - 이미 입주한 글로벌 물류 기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글로벌 배송센터 최적 입지 및 생산 거점 연계로 시너지 효과

수출입 통관 절차가 없고, 관세 특례와 부가세 영세율 적용 혜택 및 토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물류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한층 올라갑니다.

인천공항의 예



관세특례

- **외국물품 비관세 : 자유무역지역**
- **반입신고 대상 내국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로 보아 관세 등을 환급**
 -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 원재료, 운철유,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해외 반입
모든 생산설비/
물품 등 무관세

부가세 영세율 적용

- **FTZ로 반입 신고 대상 내국 물품 중**
 -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 원재료, 운철유,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 **FTZ 입주 업체간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 물품 등과 영역**

공장설립에 필요한
원자재, 기계설비
등 부가세 면제

인천공항의 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관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구분	감면내용	감면요건	
국세	관세	5년간 100% 면제	수입자본제에 한함
지방세	취득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재산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감면 가능	

개발사업 시행자

구분	감면내용	감면요건	
국세	관세	5년간 100% 면제	수입자본제에 한함
지방세	취득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
	재산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

5. 공항경제권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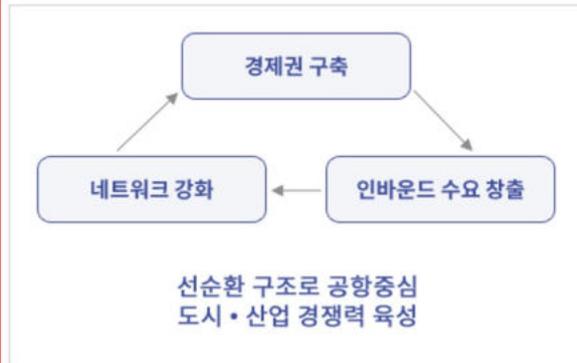
공항경제권 추진 방안

공항경제권 추진을 통한 지역 경제파급 효과

- 공항개발 효과 : 항공운송수요 증가, 항공교통 네트워크 확장
- 배후단지 개발 효과 : 산업단지 입주, 산업생산량 증대
- 지역경제 개발 효과 : GRDP증가, 취업증대, 비즈니스 확장

	연간 매출	생산유발 효과
물류	9,000억 원	1조 7,000억 원
MRO	2조 4,000억 원	3조 7,000억 원
관광	5조 8,000억 원	9조 9,000억 원
합계	9.1조 원	15.3조 원

자료원 : 인천국제공항공사



25

공항경제권 추진 방안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한 법규정, 제도의 구축 필요

현재의 법과 제도는 **공항·배후도시·주변산업의 배치·개발이 각각 별도로 계획·건설됨**에 따라 상호 시너지에 한계가 있으며, 공항의 건설과 공항운영자의 사업범위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공항이 주변지역과 연계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법안내용 미흡



26

6. 결어

정책적 제언

공항경제권 기반 경쟁력 강화 요소를 구체화한 제도 필요

- ❖ 공항경제권 개발과 육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의 책임과 역할 설정
- ❖ 공항경제권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기본계획 수립
- ❖ 공항경제권 구역 설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방안
- ❖ 공항 경제권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 설정, 토지수요 및 공공인프라 사용허가와 관련 사항
- ❖ 공항경제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원조달 방안(비용의 보조, 출자, 출연 등)
- ❖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제도

감사합니다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발제 2

**지방자치단체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김지수 센터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

발표자료

지방자치단체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2023.08.

김지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Table of Contents

- I 지방시대, 공항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 II 공항에 관한 법제도 분석
- III 해외사례
: 운영주체별 공항유형과 지자체 참여사례
- IV 지방자치단체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I

Chapter

지방시대, 공항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1. 지방분권에 관한 정부의 방향
2. 공항에 관한 패러다임 변화
3. 인천경제와 인천국제공항

01 지방분권에 관한 정부의 방향

I. 지방시대, 공항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 현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

- 역대 정부는 지방분권에 관한 비전을 제시해 왔고, 점차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옴
-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문재인정부의 국정목표는 “지방분권”과 “시민참여”에 집중
 - 현 정부는 “지역 기반의 경제활성화”에 주목하면서,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재도약,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구현을 통한 국민통합을 추구

✈️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 인천광역시

1. GTX-D Y자, GTX-E 노선신설

2.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

3.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육성

4.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해결

5. 제2의료원 설립 및 국립대학병원 유치

6.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7.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 영종 항공정비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

02 공항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

I. 지방시대, 공항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 공항경제권: 공항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Q. 공항경제권이란?

“공항의 네트워크를 주변지역(도시)의 경쟁력과 연계하여 연관 산업 생태계로 확장 발전시키는 공항과 도시의 연계 생태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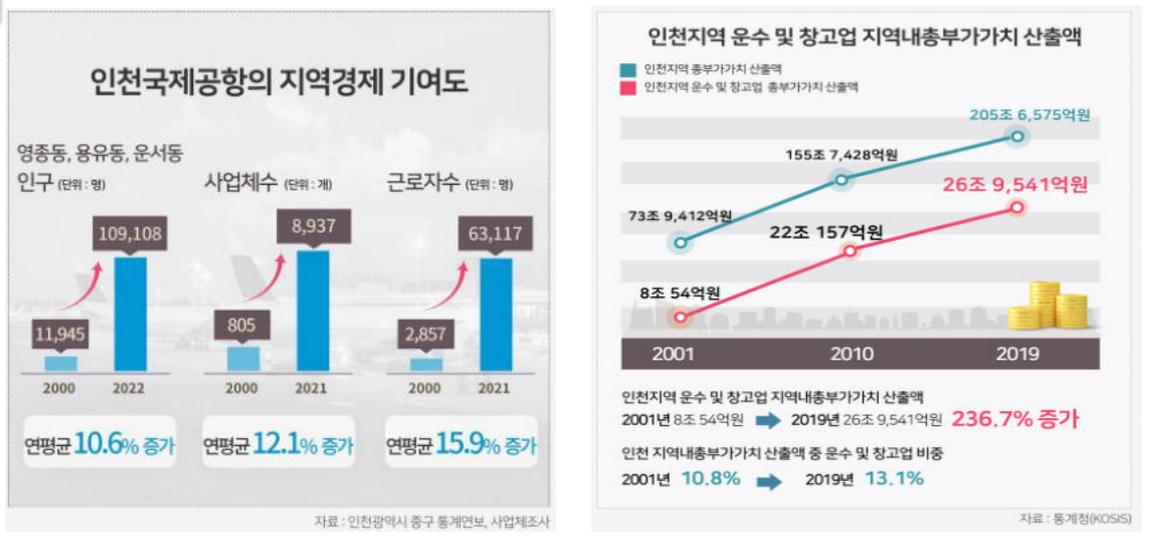
- (국토교통부) 공항이 단순한 교통거점의 역할을 넘어, 지역과 생생-발전하는 지역의 산업, 경제, 사회, 문화 플랫폼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
- (공항경제권) 비지니스, 물류, 첨단산업 생태계 등이 공항 중심으로 집적되어, 경제활동 중심 네트워크가 구축된 글로벌 비즈니스 및 생산 허브
- (공항의 발전단계) 1920년대 공항 => 1980년대 거점공항 => 1990년대 공항도시 => 2020년대 공항경제권
 - * 공항은 단순 항공교통이용시설에서 사회, 문화, 경제, 산업의 생태계의 거점공간으로 확대 발전됨
-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① 공항의 지역 앵커화를 위한 정책방향 정립, ② 공항을 활용한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 ③ BIZ포트 구축을 통한 지역 산업 연계 강화

5/42

03 인천경제와 인천국제공항

I. 지방시대, 공항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 인천경제와 인천국제공항의 관계



=> 그러나 인천경제와 인천국제공항 간 경제적 긴밀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 Why?

6/42

II

Chapter

공항에 관한 법제도 분석

1. 공항운영에 관한 법령
2. 지방자치단체 공항설립참여
3.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 참여

01 공항운영에 관한 법령

I. 공항에 관한 법제도분석

✈ 주요 법령 리스트

- (항공사업법) 항공운송사업, 항공사업의 진흥 등 항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
- (항공안전법) 항공안전 및 항공교통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
- (공항시설법) 공항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
- (항공보안법) 공항시설,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방지 및 민간항공 안전과 보안 등에 관한 사항 규율
- (공항소음방지법) 공항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

-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 외의 전국 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국가에서 건설하는 비행장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국내외에서 비행장시설의 신설, 증설, 개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율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주식회사형 공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환하고 공항건설 추진에 적극적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공항관리/운영에 보다 운영효율성을 제고

02 지방자치단체 공항설립 참여

I. 공항에 관한 법제도분석

자본의 출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 가능(한국공항공사법 제4조 제1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 가능(한국공항공사법 제4조 제2항)

⇒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항설립시 자본을 출자한 사례는 없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 자본출자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허락되지 않음

Q. 자본의 출자가 중요한 이유는?

자본출자는 공사의 이사로서 공사의 주요 결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과 연계되기 때문

*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3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 제2항)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음

9/42

03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 참여

I. 공항에 관한 법제도분석

항공사업법

⇒ 그러나 사업 자체의 계획수립에 대한 참여 권한은 없음

- (제6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공항시설법

⇒ 그러나 지자체 의견의 구속력은 없음

- (제3조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또는 종합계획변경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공항소음방지법

⇒ 그러나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한함

- (제4조 제1~3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10/42

✈ 상생협력협약을 통한 참여

- ⇒ 현재의 법제도는 공항과 배후도시, 주변산업의 배치와 개발이 각각 별도의 계획에 따라 건설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보기 어렵고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 차선책으로 공항공사와 지자체 간 협력을 위해 “상생협력협약” 체결(예시: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공사)
 - * 그러나 상생협력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한계가 있고, 주요 쟁점이 발생될 경우 그 실효성에 관한 문제제기 존재

-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생협력협약
 - 2028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협약 체결
 - 2021년 7월 23일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경제와 공항의 상생발전을 위한 “인천·공항 상생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 창립 총회 개최 개최, 2023년 설립

⇒ 관련법의 개정 또는 제정이 필요

- * “가덕신공항 특별법안”,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개정 논의가 있으나, 공항-지역 연계개발에 관한 논의는 미흡

III

Chapter

해외사례

: 운영주체별 공항유형과 지자체 참여사례

1. 운영주체별 공항유형
2. 해외 공항운영의 민영화/지방화 경향

01 운영주체별 공항유형

Ⅲ. 해외사례: 운영주체별 공항유형과 지자체 참여사례

✈ 모든 공항은 국가가 운영하는가?

- 해외의 공항운영현황자료를 토대로 공항운영방식을 분류해 보면, 공항운영주체는 중앙정부(국가), 지방정부, 공기업, 공공+민간 혼합, 민간 등 5가지로 구분됨 (유광의&유문기, 2009, 공항운영론)

유형	개념	강조하는공항의역할	대표국가	비고
중앙정부(국가)	중앙정부가 공항을 소유+관리	공익성 강조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지방정부	지방정부가 공항을 소유+관리 또는 관리만 담당	공익성 강조	영국, 미국, 독일	30대 글로벌 공항 중 5개
공기업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공항을 그산하공사/공단이 관리	공익성+생산성 강조	유럽	30대 글로벌 공항 중 25개
공공+민간 혼합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공항을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한 기업이 관리	공익성_생산성 강조	이탈리아	대규모 공항이 해당
민간	민간기업이 소유 및 관리	생산성 강조	미국, 영국	미국: 소규모 영국: 국가차원의 민영화 시도

01 운영주체별 공항유형

Ⅲ. 해외사례: 운영주체별 공항유형과 지자체 참여사례

✈ 운영주체별 장단점

- 지자체차단체의 공항운영 참여는 공항과 주변지역 연계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공기업 및 민간 운영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익과 안정성 확보에 강함

구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운영	공기업운영	민간운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건설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대규모 계획수립을 통해 국가/지자체 개발사업과 연계용이 • 공항 관련 세제 혜택, 자금조달 및 투자용이 • 공익과 안정성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경영진 및 기술진에 의한 공항 운영 및 관리 용이 • 공항이용객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및 다양화 추구 가능 • 민간운영에 비해 공익추구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재정부담 없음 • 공항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문경영화 급변하는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조직, 인력 등을 관리 • 공항의 소유-경영 분리 시 경영능률 확보에 용이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변하는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부족 •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경우 지역개발과의 연계성 미흡 • 법제도적 차원의 제약이 크고 관료제에 기반한 경직된 운영으로 높은 수준의 공항이용객 대상 서비스 제공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의 특성상 민간기업에 비해 여전히 관료적 조직문화 우려 • 정부의 법령과 제한된 예산범위내의 경영이 불가피하여 신속/능동적인 환경변화 대응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운영수익을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적자발생시 공항서비스 질 저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공익보다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하므로 공익성 보장에 한계 • 대규모 관리비, 사업비 조달이 어려울 경우 위기 발생 가능

01 운영주체별 공항유형

Ⅲ. 해외사례: 운영주체별 공항유형과 지자체 참여사례

✈️ 영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참여 가능성 차이

- 항공기 이동지역(Air side) 업무: 지자체 참여가능성 낮음
- 일반업무관리지역(Land side) 업무: 지자체 개입 가능성이 높음
- 공항 주변지역 업무: 공항주변의 개발 관련 부분은 지자체 개입 필요 영역

항공기이동지역(Air side)	일반업무관리지역(Land side)	공항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이착륙 및 주기지역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공역, 항공보안시설, 항공관제시스템, 격납고 등 • 고도의 전문성과 전국적 통일성 필요 • (국내의 경우) 국가차원의 관리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청사, 화물청사, 공항접근도로, 주차장, 경비 및 보안, 면세점 및 상업시설 관리업무 등 • 상대적으로 전문성의 강도가 낮음 • 민간기업, 공사 또는 지자체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주변지역의 개발사업, 항공관련 사업 등 • 지자체 및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오히려 그 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영역

⇒ “공항의 소유 및 운영,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모든 사무를 반드시 국가사무로 둘 필요는 없음

15/42

02 해외 공항운영의 민영화/지방화 경향

Ⅲ. 해외사례: 운영주체별 공항유형과 지자체 참여사례

✈️ 공항운영의 민영화, 지방화 경향

- 2016년 기준, 세계 30위권 공항의 경우 중앙정부가 소유하고 공기업이 운영하는 경우(15개), 지방정부가 소유 및 운영하는 경우(미국 5개),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공기업이 운영하는 형태(미국 5개), 공기업이 소유와 운영을 겸하는 형태(5개)
 - * 미국: 5천 여개의 공항 중 약 4천 여개의 공항이 정부 또는 준정부(시, 자치단체) 소유(국토해양부, 2011)
단, 미국의 주정부는 지방정부로 분류되지만, 국가수준의 높은 자치권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국내의 자치단체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 영국: 중앙정부가 공항운영에 관여하는 정도가 적고, 민영화 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일부 주식을 보유하며 공항운영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향이 많음(유광의 & 유문기, 2009)
(예)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헤세 주정부 31.5%, 시 정부 20.12% 소유권 확보
 - * 일본: 공항개발계획을 중앙정부-주정부가 모두 수행 가능(한국교통연구원, 2005)
단, 소규모 공항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면서 재원조달은 국가-지자체가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아시아: 중앙정부소유, 공기업 운영방식이 일반적임

16/42

 주요사례

-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도시
 - 암스테르담 도심 연결 교통축을 따라 거점개발하여 산업집적이익을 주요 도시로 확산
 - 공항공사, 시정부, 주정부, 지역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한 개발회사(SADC) 설립 및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
- 미국 멤피스 Aerotropolis
 - FedEx 월드허브를 앵커로 하여 콜드체인, 화물처리시설, 배후물류단지 등 조성
 - 공항반경 39km 이내 산업, 주거, 상업단지 개발
-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도시
 - 관광, 업무, 주거 결합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신규 수요 창출
 -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형 개발을 추진



IV

Chapter

지방자치단체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 법률 제 · 개정에 관한 제언

✈️ 공항 경제권 계획, 개발, 육성에 대한 지자체 참여 근거 법령 제정

-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을 연계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근거법령 제정 필요
 -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역단위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보 필요
 - * 국가-지자체-민간기업 등이 참여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 출자, 출연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

-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의 개정
 - "공사-지자체-지역사회(주민, 민간단체 등)" 간 상생협력체계를 법제화 =>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강화
 - 일반업무관리지역(Land side) 업무에 대한 주민참여 가능성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회 확대
 - * 단,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소유권은 국가, 일반업무관리지역(또는 그 중 일부)의 공항운영권만 임대 가능
요금 상한선 규제 등 안정적 공항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을 규정할 필요는 있음



감사합니다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패널토론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14
----------	-------

발의연월일 : 2023. 5. 10.

발 의 자 : 배준영 · 金炳旭 · 이양수
김 용 · 최춘식 · 양금희
류성걸 · 정경희 · 강대식
허종식 · 윤창현(11인)

제안이유

공항의 개발과 운영이 단순히 항공운송과 항공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데 주안점이 있던 시대가 저물고, 공항의 역할이 경제와 산업·사회와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항이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항 주변지역을 상생·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아울러 지난 5년간 국내 공항 당기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13개의 지방공항 중 상당수는 2016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공항이 적자운영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것은 지역공항이 지역의 경제, 산업, 사회, 문화와 연계·융합되어 특화되지 못하고 단순히 교통 거점의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 공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기존 ‘단순한 교통 거점의 역할’에서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 플랫폼’으로 육성·발전시킬 것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행이 미미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항이 지역과 연계되어 특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공항경제권 개발과 육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 운영자의 책임과 지원방안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다. 공항경제권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은 국가 계획으로, 사업계획은 지방자치단체계획으로 하고, 공항경제권위원회의 설치 등 운영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라. 사업구역과 적합업종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
- 마. 인가·허가 등의 의제와 일괄협의를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등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
- 바.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항운영자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8조).
- 사.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공항경제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함(안 제43조 및 제45조).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이란 여객·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 “공항경제권”이란 공항의 영향권이 미치는 지역으로서 지역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공항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을 연계하여 공항경제권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공항경제권사업”이란 공항경제권에서 공항과 지역의 경제, 산업, 사회, 문화, 관광, 교육, 휴양, 상업 및 레저 등을 연계한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

를 말한다.

5. “사업구역”이란 공항경제권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6. “공항산업”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7. “항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제15호·제17호·제21호·제23호·제26호·제28호·제30호 및 제32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중 항공기를 운송수단으로 하는 사업

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항공우주산업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개발·활용하는 사업

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드론산업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비행장, 공항,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을 개발·운영·지원하는
사업

사.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비행장·공항·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을 이용하는 관련 제조
·서비스 산업

8. “적합업종”이란 공항경제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산업분야
로 제20조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9. “공항경제권시설용지”란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10.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공항경제권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
제권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
며 공항산업 및 적합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공항산업, 항공산업

및 적합업종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항운영자의 책무) ① 공항운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여 공항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과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출자·출연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항경제권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항경제권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7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제2장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 등

제8조(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경제권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중장기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항산업과 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 적합업종 선정과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적합업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항공기정비업의 진흥, 중소기업의 진흥, 연구개발, 문화관광의 진흥방안을 포함한다)
5.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7. 공항경제권사업에 관한 사항
8. 연계교통시설의 신설·개선에 관한 사항
9.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0.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11.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12.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공항이 위치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가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한정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의 경제·산업·인문·사회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 등) ①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공항산업

· 항공산업 및 적합업종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항경제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적합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6. 제43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항경제권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할 시·도지사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공무원(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

4. 공항경제권 기본계획에 포함된 공항의 공항운영자

5. 항공·도시계획·교통·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공항경제권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⑤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공항경제권지원단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공항경제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지원단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파견 또는 겸임자에게 승진·전보·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장 공항경제권사업

제1절 공항경제권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제14조(공항경제권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공항별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항경제권사업의 명칭
2. 공항경제권사업의 내용, 대상지역 및 면적
3.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기간
4. 공항경제권 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5.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방식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8. 도시경관 및 재난방지 등에 관한 계획
9.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10. 공항경제권시설용지에 관한 사항(공항경제권시설용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13. 고용 및 정주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4. 재원조달계획

15. 그 밖에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⑧ 관할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공항경제권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경제권시설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 한도 이내에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의 제안) ①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 및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구역의 지정) ① 관할 시·도지사는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한다.

②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관할 시·도지사는 지정된 사업구역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공항경제권사업의 명칭·목적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4. 제30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 목록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제18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① 관할 시·도지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가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항경제권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행위 제한 등) ①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사업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적합업종의 지정) ① 관할 시·도지사는 수립된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에 대한 적합업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된 적합업종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절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 및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

제21조(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항운영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항경제권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조에 따라 승인 받은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5. 제24조에 따라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6.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항경제권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7. 사업시행자가 제34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

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경제권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① 관할 시·도지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자 중에서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지정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항경제권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매수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④ 관할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항경제

권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매도 명령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의 기준 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⑧ 관할 시·도지사는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제4항 전단에 따른 매도명령을 하기 전에 또는 그 매도명령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항경제권사업의 명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4.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기간
5. 적합업종에 대한 지원계획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8. 채용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9.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할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관할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항경제권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4. 사업시행자가 제34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할 시·도지사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

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1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19.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0.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22. 「자연공원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2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

획의 승인

25.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관할 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려는 자 등의 인적사항·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항경제권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제27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항경제권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를 적용한다.

제3절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

제29조(공항경제권사업의 총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경제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공항경제권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구역에서의 공항경제권사업의 총괄관리
2.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검토
3.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4. 공항경제권사업에 포함되는 개별 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마련
5. 용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6.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7. 그 밖에 공항경제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1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운영자
4. 지방공기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원형지 개발을 위한 원형지 개발 방향, 공급계획, 공사의 착수 기한, 공사의 준공예정일, 사업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원형지 개발방향

2.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지개발자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원형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원형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4. 그 밖에 원형지를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공항경제권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공항경제권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관할 시·도 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7조(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에 있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

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38조(비용의 부담 등) ① 공항경제권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항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 및 출자·출연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제4절 준공확인 등

제39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경제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공항경제권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공항경제권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공항경제권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관할 시·도지사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0조(공사완료의 공고) 관할 시·도지사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승인서와 제39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조성토지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처분절차·가격기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금조성과 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공항경제권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공항경제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공항산업과 항공산업의 육성과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의 사업, 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입주자협의회 구성 등) ① 관할 시·도지사는 제40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사업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도지사는 공항경제권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장 보칙

제46조(청문)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2. 제24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제47조(권리·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은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
2.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구역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위반한 자

3.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자

4. 제27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서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